

##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3. 14.

### 하동군의회의회장 강 대 선

1. 조례명: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농업기계 임대 시 운반비용을 농업기계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차등 규정하여 농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 중 임대농업기계 운반비를 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차등 규정(안 별표 1)

	현 행	개 정 안
임대농업기계 운반비	전지역 40,000원/왕복	운반차량 최대적재량 기준(전지역/왕복) 1) 1톤 이하 : 20,000원 2) 1톤 초과 ~ 4톤 미만 : 30,000원 3) 4톤 이상 : 40,000원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##### 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[bcfarc@korea.kr](mailto:bcfarc@korea.kr)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 명: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임대농업기계 운반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대농업기계 운반비	운반차량 최대적재량 기준(전지역/왕복) 1) 1톤 이하 : 20,000원 2) 1톤 초과~4톤 미만 : 30,000원 3) 4톤 이상 : 40,000원
------------	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